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32 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:권명호·강기윤·구자근

김도읍 · 송언석 · 엄태영

유상범 • 이만희 • 최춘식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 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다만,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그러나, 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,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 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(안 제11조의3

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3(고령자인재은행 및 중	제11조의3(고령자인재은행 및 중
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	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
정취소 등) ① (생 략)	정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
	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
	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
	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